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다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7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
3. 제안이유

-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철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·구성 등(안 제5조~제10조)
- 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(안 제11조)
-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(안 제12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충북도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제안하여 후보지로 선정되었고,
-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수립 후 본격적인 단지 조성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철도산업에 대한 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황으로,
- 본 조례안은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8조에 근거하여 충북의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한편,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·시행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로 부산과 경기*, 기초지자체로 익산**이 있음.

* 「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(15.11.04 제정)

「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」(09.08.13 제정)

** 「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」(19.04.15 제정)

나. 조례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철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, 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의 근거, 철도사업 육성사업의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음.
-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

의,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.

- 안 제4조는 철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간사, 위원의 해촉,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의 근거, 철도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위탁하였거나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하여 규정함.
- 제14조는 철도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.

○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입법예고('23. 6. 2.~'23. 6. 22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 철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,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의 설치·구성,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육성사업과 위탁의 근거 및 철도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북의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
- 국토교통부로부터 오송 철도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향후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를 대비하여 충북의 철도산업에 대한 충북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점,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, 조례 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